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7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 및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7호(2015. 8. 10.), 제2016-44호(2016. 5. 10.) 및 제2018-34호(2018. 4. 4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92호(2015. 11. 25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니다.

2018년 6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31-6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747.0㎡ (대지 585.9㎡, 정비기반시설 161.1㎡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 시행자 : (주)성원애드피아 (대표이사 정대원)
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6

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8년 6월 12일

바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

1) 정비사업 시행면적 변경

구 분	변경전 ¹⁾	변경후	증 감	변경사유
시행면적	764.0㎡	747.0㎡	감) 17㎡	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대지면적	602.9㎡	585.9㎡	감) 17㎡	
정비기반시설	161.1㎡	161.1㎡	-	

1)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(2015.11.25.) 기준

2) 건축계획의 변경

구 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대지면적(m ²)	602.9	585.9	확정측량 및 사업시행변경인가('18.0 4.02.)에 따른 변경
건축면적(m ²)	361.47	360.90	
건폐율	59.96%	61.60%	
연면적(m ²)	5,352.81	6,011.90	
용적률	662.13%	701.76%	
층 수	지하4/지상12층	지하5/지상12층	
높 이	45.9m	변경없음	
주 용 도	숙박시설	변경없음	

3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가)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: 해당없음

나) 체비지 시설 : 해당없음

다) 보류지 시설

- 기정 : 토지 602.9m², 건물 5,352.81m²- 변경 : 토지 585.9m², 건물 6,011.90m²

4)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)

가)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(행정청에 무상귀속)(확정측량결과 반영)

시설명	변경전				변경후			비고
	지번	지 목	공부상 면적(m ²)	편입 면적(m ²)	지번	지 목	면적(m ²)	
도로 (중로2-192)	충무로4가 131-6	대	382.20	71.00	충무로4가 315-1	도	161.10	
	충무로4가 125-54	도	90.10	90.10				
계	2필지			161.10	1필지		161.10	

나)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없음

5) 분양대상자의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동 : 변경없음

사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 및 공사 완료

아. 관계서류 : 생략 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).